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<보기>의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.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 준설선(浚渫船)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,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이어서 훈련에 참가하였다.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.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 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.

— <보 기> —

- 甲은 (가)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.
- (나)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(다)이다.
-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甲은 (라)을/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	<u>(가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①	전몰군경	국방부장관	5년	보상금 지급
②	순직군경	국방부장관	5년	보상금 지급통지서
③	순직군경	행정안전부장관	3년	보상금 지급통지서
④	전몰군경	행정안전부장관	3년	보상금 지급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.
- ② 교육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에 포함된다.
-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,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-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문 13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甲, 乙, 丙,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)

- 甲은 1990. 4. 20. 출생한 남자로서 2018. 2.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. 1. 3.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 해에는 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, 2022. 2. 5. 승선하여 같은 해 8. 31.까지 승선하기로 되어 있다.
- 乙은 1996. 2. 10. 출생한 남자로서 2016. 3. 2.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. 8.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.
- 丙은 1987. 7. 5.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.
- 丁은 1990. 9. 10. 출생한 여성으로서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.

——<보 기>——

- ㄱ.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, 甲은 B 해운회사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.
- ㄴ.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. 4.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고, 2022. 8.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.
- ㄷ.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, 丙은 법원행정처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.
- ㄹ.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,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, ㄹ

문 14. 「민방위기본법」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- ㄴ.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민방위 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.
- ㄷ.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 이유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.
- ㄹ.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ㄱ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,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읍·면·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④ 민방위 대장은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·면·동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다.
-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·지역·기간·방법·사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,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문 17. 다음은 「민방위기본법」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. ㉠ ~ 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제33조(민방위 경보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㉠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㉢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㉣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- ① ㉠은 해당 읍·면·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㉡에 포함된다.
- ③ ㉢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운수시설 중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 ㉣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문 18. 「민방위기본법」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
 ㄴ.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
 ㄷ.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 경우
 ㄹ.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

- ① ㄹ
 ② ㄱ, ㄴ
 ③ ㄴ, ㄷ
 ④ ㄱ, ㄷ, ㄹ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1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소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·대대·지역대·중대·소대·분대로 편성하며,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군대원을 시·군·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.
 ④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구에 여러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하며,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중 연장자를 직장의 장으로 한다.